

의안번호	2206170
의 퇴 인	강훈식의원
회 답 일	2025. 2. 21.
추계번호	24A5693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녹색경영추진위원회 설치, 전담기관의 지정, 실태조사 및 탄소감축가치 평가, 홍보 및 포상 등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5억원(연평균 13억원)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7조)	348	78	78	78	78	660	132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안 제8조)	16	16	16	16	16	80	16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9조)	538	549	560	571	582	2,800	560
중소기업 녹색경영 실태조사 (안 제10조)	368	368	368	368	368	1,840	368
탄소감축가치 평가(안 제11조)	120	—	—	—	—	120	24
홍보 및 포상(안 제25조)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합 계	1,590	1,211	1,222	1,233	1,244	6,500	1,300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 금융, 기술개발, 기업 간 협력 등의 지원 3.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 4.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및 녹색경영혁신지구 지정제도 운영 5.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8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 위원회)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3	안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1.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2항) 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기획, 조사, 연구, 평가 2.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금융·기술·인력·교육·디지털화·컨설팅 등 지원 3. 녹색경영혁신기업 확인제도 운영 지원 4. 탄소감축가치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등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탄소감축가치 관련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5.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감축 방안 등에 대한 조사·연구 및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6.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안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센터를 둘 수 있음(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4	안 제10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5	안 제11조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등에 대한 탄소감축가치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게 제15조에 따른 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대상 및 규모의 결정 등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야 함(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지원(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12조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의 측정 및 활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탄소발자국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13조 (정보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탄소중립 관련 정책 등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8	제14조 (진단 및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하여 중소기업에게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진단 및 컨설팅 실시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9	제15조 (금융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공정이나 설비를 개선하는 등 녹색경영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녹색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 투자, 유동화회사보증 등의 금융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제16조 (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 임원 또는 직원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녹색경영 촉진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1	제17조 (녹색기술 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 등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그 밖에 녹색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기술의 이전과 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녹색기술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중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업에 대하여 녹색기술의 활용에 관한 생산공정 진단·지도사업과 녹색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12	제18조(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 및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3	제19조(세제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이나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제20조(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 등을 위하여 소그룹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녹색경영과 관련한 조합이나 협회 또는 단체 등을 결성·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조합, 협회,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5	제21조(상생협력 지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이하 “상생협력”이라 한다)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상생협력 기반 조성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수행 4.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5.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 사항	재량규정
16	제22조 (시급업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경영이 시급하거나 녹색경영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 등에 대하여는 녹색기술의 이용·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제23조 (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녹색기술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1. 녹색기술전문기업의 창업 지원 2.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3. 녹색기술전문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 그 밖에 녹색기술전문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8	제24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녹색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1항) 1. 제13조에 따른 정보 제공 2. 중소기업과 녹색기술전문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신청 및 평가 등 관리 4. 탄소감축가치 평가 및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관련 자료의 저장, 관리 및 활용 5. 그 밖에 중소기업 녹색경영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재량규정
19	제25조(홍보 및 포상)	정부는 중소기업 녹색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경영 또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감축 우수 사례 발굴·홍보,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세미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 녹색경영 또는 중소기업 탄소발자국 감축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0	제28조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정부는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 자금, 판로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21	제31조(부담금의 면제)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함(제1항)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													
2	안 제8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	—													
3	안 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	—													
4	안 제10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													
5	안 제11조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	○	—													
6	안 제12조 (중소기업탄소발자국의측정및활용)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2026}^{2030} [\text{지원대상 기업 수}_t \times \text{정부지원단가}_t]$ 기업별 탄소발자국 측정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대상 기업 수와 정부지원단가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으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7	안 제13조 (정보제공)	×	$\text{추가재정소요} = \sum_{t=2026}^{2030} [\text{녹색 경영 자료수집비용}_t + \text{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_t]$ 중소기업 녹색 경영정보의 내용과 수집 범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8	제14조(진단 및 컨설팅 지원)	×	기존예산의 활용 가능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명</th><th rowspan="2">내역사업명</th><th colspan="3">예산(단위:억원)</th></tr><tr><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td><td>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td><td>118</td><td>118</td><td>118</td></tr></table>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18	118	118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18	118	118												

9	제15조 (금융 지원)	×	기존예산의 활용 가능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Net-zero 유망기업 자금	462	967	938
10	제16조(전문인력 및 교육 지원)	×	기술보증기금 출연	기후대응보증	400	500	550
			기존예산의 활용 가능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11	제17조 (녹색기술 개발 및 이전·확산 지원)	×	연수사업	연수사업	427	239	238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6}^{2030} [\text{녹색기술개발 기업 수}_t \times \text{정부출연단가}_t]$				
			중소기업 중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기관 등 현황, 기술 개발 및 이전관련 정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2	제18조(디지털화 지원)	×	기존예산의 활용 가능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ICT융합 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30	30	50
13	제19조(세제 지원)	×	재정수입감소액 =				
			$\sum_{t=2026}^{2030} [\text{세제지원 대상 기업 수}_t \times \{\text{부과세액}_t \times \text{감면세율}_t\}]$				
			세제지원의 대상과 감면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제지원 대상 기업 수와 부과세액, 감면세율 등의 기초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재정수입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추가재정소요액 =				
14	제20조(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	$\sum_{t=2026}^{2030} [\text{공동연구 및 활동 단체 수}_t \times \text{정부지원단가}_t]$				
			중소기업 공동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수행하는 소그룹, 조합, 협회 등 단체 수를 알 수 없고,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관한 정부사업계획이 필요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5	제21조(상생협력 지원)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6}^{2030} \{[\text{기술협력 건수}_t \times \text{정부지원단가}_t]$ + [인력교류 지원 건수_t × 평균 지원 금액_t] + [공동사업 지원건수_t × 평균 지원 금액_t]\}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기술협력, 인력교류, 공동사업)별 정부지원 내용과 지원단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6	제22조(시급업종 등 지원)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6}^{2030} [\text{시급업종별 지원 기업 수}_t \times \text{정부지원 단가}_t]$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시급업종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업종 중 상위에 접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정부 시범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수립 전이어서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17	제23조(녹색기술전문기업의 육성)	×	기존예산의 활용 가능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명</th><th rowspan="2">내역사업명</th><th colspan="3">예산(단위:억원)</th></tr><tr><th>2023</th><th>2024</th><th>2025</th></tr><tr><td>창업사업화지원</td><td>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td><td>152</td><td>77</td><td>80</td></tr><tr><td>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R&D)</td><td>그린유망100</td><td>157</td><td>41</td><td>19</td></tr></table>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창업사업화지원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152	77	8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R&D)	그린유망100	157	41	19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단위:억원)																			
		2023	2024	2025																	
창업사업화지원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152	77	80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R&D)	그린유망100	157	41	19																	
18	제24조 (중소기업 녹색경영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6}^{2030} [\text{정보시스템 자료 규모}_t \times \text{시스템 구축비용}_t]$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에 따라 생산되는 녹색경영정보, 기업간 교류정보, 정부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탄소발자국 및 탄소감축가치 평가 등의 정보량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규모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시점에 이를 파악하는데에 한계가 있음																		
19	제25조(홍보 및 포상)	○	—																		

20	제28조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	추가재정소요액 = $\sum_{t=2026}^{2030} \sum_{i=1}^2 [\text{녹색경영혁신기업 수}_t \times \text{정부지원단가}_{it}]$ ($i=1$ 지원단가, $i=2$ 정부특례에 따른 비용단가) 녹색경영혁신기업에 대한 정의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정부 지원 대상 혁신기업 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전이어서 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1	제31조(부담금의 면제)	×	재정수입감소액 = $\sum_{t=2026}^{2030} \sum_{i=1}^3 [\text{녹색경영혁신기업 수}_t \times \text{부담금 면제액}_{it} 1]$ ($i=1$ 개발부담금, $i=2$ 교통유발부담금, $i=3$ 전기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별 산식에 따라 계산되며 녹색경영혁신기업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사업의 종류 및 해당 지가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현재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 제1조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 안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비용은 중소벤처기업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함
 -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관련 유사 연구용역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2023)”의 용역비를 준용하여 2026년 첫 해에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시행계획 수립비용은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방안 정책 연구 용역(2024)”의 연구용역비를 준용하여 매년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제정안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억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녹색경영 기본계획 수립	270	—	—	—	—	270	54
중소기업 녹색경영 시행계획 수립	78	78	78	78	78	390	78
합 계	348	78	78	78	78	660	13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운영 (안 제8조)

- 비용추계 대상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비용으

로,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수당과 경상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함

- 위원회는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1회씩 연간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비는 1회당 20만원²⁾ 및 회의당 회의자료, 인쇄물 배포 등 400만원의 경상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비(15인×20만원×4회=1,200만원) + 경상경비(400만원) = 1,600만원

[표 3]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운영 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	16	16	16	16	16	80	1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추진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600만원으로 예상됨

다. 전담기관의 지정 (안 제9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전담 기관의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를 항목을 구성하여 지정에 따른 비용을 산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출자료에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전담기관은 3개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전담기관별 3인의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인건비와 기관운영경비를 지원할 때 비용을 추산함
 - (인건비) 인건비 단가는 전담기관 지정이 예상되는 3개 기관 평균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

2)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근거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표 4] 중소기업 관련 전담 예상기관 신입사원 1인의 평균임금¹⁾

(단위: 천원)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균
임금	50,264	42,112	38,927	43,767

주: 1) 평균임금은 2024년 예산 기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금액임

자료: ALIO 공시시스템

- 전담기관 평균 임금에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을 적용하면 추계기간 동안 예상되는 인건비 단가를 추산할 수 있음

[표 5] 전담기관 인건비 단가 전망: 2026~2030년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임금	47,111	48,100	49,062	50,044	51,04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3개의 전담기관에 신규인력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은 [표 6]과 같이 추계됨

[표 6] 전담기관 인건비전망: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424	433	442	450	459	2,208	442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기관운영경비) 전담기관에 지원하는 기관운영경비는 3개 전담기관의 인건비 대비 기관운영경비의 평균 비율에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 2024년 예산 기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전체 운영경비 평균 비중을 살펴보면, 인건비 80%, 기관운영경비 20%임

[표 7] 전담기관 기관운영경비 전망: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관운영경비	114	116	118	121	123	592	11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28억원으로 추계됨

[표 8] 전담기관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424	433	442	450	459	2,208	442
기관운영경비	114	116	118	121	123	592	118
합 계	538	549	560	571	582	2,800	56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안 제10조)

- 안 제10조 따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따른 비용”으로 유사 실태조사 용역사례를 준용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 실태조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비용을 추계함
 - 유사 연구용역 사례인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의 2022년 결산 및 2023년 예산 금액을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매년 3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8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9] 중소기업 녹색경영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중소기업 녹색경영 실태 조사(안 제10조)	368	368	368	368	368	1,840	3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마.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 (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른 추계 대상은 사업 첫 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감축가치의 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비용이며, 유사성 높은 연구용역을 준용하여 비용을 추정함
 - 제정안의 탄소감축가치 평가와 유사성이 높은 연구 용역의 2건의 평균 비용은 1억 2,000만원임
 - 탄소중립기술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평가·관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 120백만원)
 - 국제탄소규제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방법론 개발 연구(I) (환경부 '24, 120백만원)
- 제정안에 따라 탄소감축가치의 평가 및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2026년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0] 탄소감축가치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탄소감축가치 평가(안 제11조)	120	-	-	-	-	120	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바. 홍보 및 포상 (안 제25조)

- 제정안에 따른 홍보 및 포상 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 포상 및 제반 경비를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을 추정함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행사”의 홍보 및 포상비용인 연 2억을 준용하여 비용으로 산정함

- 제정안에 따라 홍보 및 포상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11] 홍보 및 포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홍보 및 포상 (안 제25조)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sembly.go.kr